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(서동용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14822

발의연월일: 2022. 2. 24.

발 의 자:서동용・김정호・윤재갑

안민석 · 인재근 · 서삼석

최인호 • 유기홍 • 김철민

도종환 · 김승남 · 권인숙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급여제한사유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잘못된 급여가 지급된 경우 등에는 이를 환수하도록 하고 있음.

하지만 최근 5년간 미환수액이 약 9억원으로 추정됨에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는 환수 대상자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 환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있음.

이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의 권한에 급여 환수 대상자의 근로소 득 및 사업소득에 대한 자료 요청을 추가함으로써 환수 업무가 원활 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9조제4항제2호). 법률 제 호

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제4항제2호 중 "교직원 및 연금수급자의"를 "교직원, 연금수급자 및 제39조에 따른 급여 환수 대상자의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9조(공단의 권한 등) ① ~ ③	제19조(공단의 권한 등) ① ~ ③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④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	4
을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기관	
또는 단체에 해당 자료를 제공	
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	··
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	
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	
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.	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교직원 및 연금수급자의 과	2. 교직원, 연금수급자 및 제39
세소득을 확인하기 위한 범	조에 따른 급여 환수 대상자
위: 국세청장에 대하여 근로	<u>의</u>
소득자료 및 사업소득자료	
3. ~ 9. (생 략)	3. ~ 9. (현행과 같음)
⑤・⑥ (생 략)	⑤・⑥ (현행과 같음)